

# 2025년 벤처·로컬 창업 인턴스쿨 사업 재공고

도내 예비 창업자 대상 전문교육을 운영하는 '벤처·로컬 창업 인턴스쿨 사업'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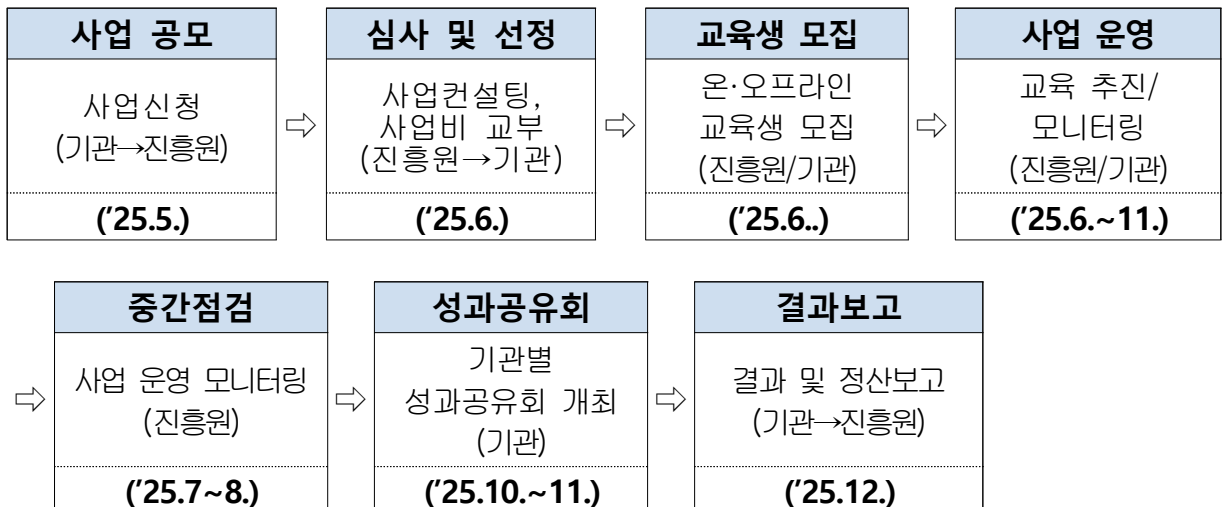
2025년 5월 27일

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

## 1. 사업개요

- (사업기간) '25. 6. ~ 11.(5개월)
- (추진방법) 도내 대학 및 기관·단체 대상 공모
- (총사업비) 50백만원
- (주요내용) 벤처·로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대상 전문교육
  - (기초교육) 조직, 재무, 인력 등 창업을 위한 행정·재정적 교육
  - (심화교육) 분야별 사업 전략 설계 및 창업 역량 강화 교육
  - (컨설팅) 창업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

※ 컨설팅은 전남창업지원종합플랫폼(무료 3회 컨설팅) 연계 추진
- (추진절차)



## 2. 대상 및 내용

- (사업대상) 창업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도내 대학(창업지원단 등) 및 기관·단체(고유번호증 소유)
- (선정규모) 1개소 내외
- (지원사항) 50백만원 내외
  - ※ 신청규모,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 및 지원금 조정 가능
- (사업내용) 벤처·로컬 예비창업자 대상 전문교육 운영
- (사업 필수 요건)

구 분	필 수 요 건	비고
대상/인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대상 : 벤처·로컬 예비 창업자</li> <li>※ 19세 이상 도내 거주자, 벤처 분야 우선 선발</li> <li>- 교육인원 : 개소별 50명 내외</li> </ul>	
교육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초교육 : 조직, 재무, 인력 등 행정 재정적 교육 5차시(5시간 이상), 집합·온라인 병행 등</li> <li>- 심화교육 : 분야별 사업 전략 설계 및 역량 강화 캠프(16시간 이상)</li> </ul>	
성과도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성과공유회 개최</li> <li>- 창업 아이템 발굴(사업계획서 작성 등)</li> <li>- 사업자등록 등</li> </ul>	

## 3. 신청 및 접수

- (접수기간) '25. 6. 6.(금)까지
- (접수방법) 공문 접수 ※ 수신처 : (재)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
- (제출서류)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[붙임 참조]

## 4. 심사 및 선정

○ (심사방법) 서류심사 ※ 필요 시 발표심사

○ (심사기준)

(단위 : 점)

순서	심사항목	심사기준	합계
<b>합 계</b>			<b>100</b>
1	기관의 전문성	유사 교육 추진 실적 및 교육 내용의 전문성	30
2	계획의 적합성	사업 목적 대비 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	30
3	예산의 효율성	편성된 예산의 효율성 및 적합성	20
4	성과의 효과성	사업 수행의 정량적 및 정성적 성과	20

○ (선정기준)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

-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심사항목 순서별 평균점수 고득점 순 선정
-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규모에 포함되더라도 탈락 처리

○ (최종발표) '25. 6월 중, 인평원 누리집

## 5. 기타 유의 사항

- 일정, 심사 등 본 공고는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에 재공고됨
- 심사 시작 전 서면 철회 요청, 수정사업계획서 미제출은 사업 포기로 간주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신청 접수 결과가 선정 규모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하여 사업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
- 진흥원은 심사 전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심사 결과 적합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으며, 재공고 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
- 서류의 허위 기재, 착오, 누락, 변조, 위조 등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- 제출된 서류는 사업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내용의 평가 및 사업 선정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음
- 아래 사유에 해당 시, 사업비를 회수하고 선발을 취소함

#### 사업 중단 및 환수

-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항목이나 집행 불가 항목에 예산을 사용한 경우
- 운영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경우
-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-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
- 제출한 사업 계획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,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

- 최종 사업 선정 후 심사위원의 제안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불응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 결정 공문 시행 전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인정하지 않음
- 사업 중도 포기 시 진흥원의 절차에 따라 보조금 정산 및 환수 처리함
- 사업 중도 포기 등은 향후 진흥원 사업에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진흥원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허위 내용 확인 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처리함
-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·형사상 책임 및 제반비용은 해당 기관에서 부담
- 선정 기관은 진흥원이 주관하는 담당자 회의, 중간보고, 성과 공유회, 만족도 조사,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함
- 공고 내용, 지침서 등의 사항이 없는 경우, 진흥원의 검토 및 해석에 따름

#### 사업 제외 대상

- 동일(유사)사업으로 국가, 타 지자체,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
- 단순 친목이나 일회성(소모성) 행사, 영리 목적의 모임 또는 활동
- 경상적 경비(일반운영비, 여비, 식비, 사무실 임차료 등)가 주된 사업
-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임 또는 사업의 경우
-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
-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